

2026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지역 기반 영화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 지역성과 영화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우수한 작품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25.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지역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영화인을 육성하여 제주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제주다양성영화 발굴 및 영화문화 다양성 기여
- 형식적 지역 요건을 넘어 제작 과정 전반의 실질적인 지역 기여를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6. 12. 10.
- 지원내용 : 영화 제작을 위한 순제작비 지원
(제작 인력 인건비, 촬영 관련 임차비, 제작 진행비 등)
-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 지원자격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가.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영화, 영상, 미디어 등)
 - 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 (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에 한함)

※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
※ 1인(제작사)당 1편만 지원 가능(중복 접수 불가)
※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작품요건**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작품

가. 제주 사회·역사·문화·환경 등 주요 소재로 한 작품

나. 전체 촬영 분량 중 제주도 촬영 비중 40% 이상

※ 촬영 회차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촬영 회차 대비 제주도 내 촬영 회차의 비율로 계산함

다. 전체 스태프 구성 중 제주도민 참여비율 20% 이상

※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배우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상 제주도로민으로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함

- ※ 상기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우대가점 부여
- ※ 상기 조건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뿐 아니라, 협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조치될 수 있음
- ※ 극영화의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 촬영이 개시된 작품은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7편 내외, 총 지원금 162,000천 원

지원부문	편당 지원금액	비고
장편	최대 70,000천 원 이내 차등 지급	상영시간 60분 이상
단편	최대 15,000천 원 이내 차등 지급	상영시간 60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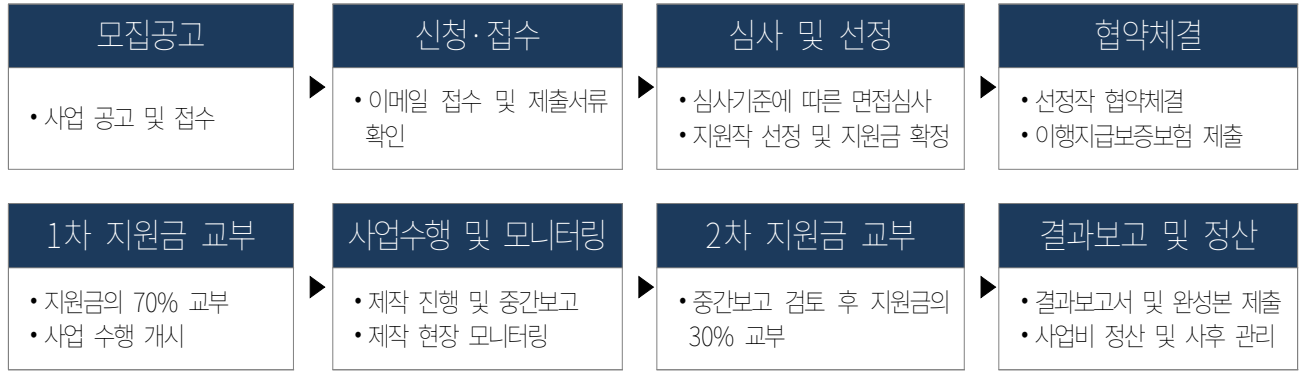
- ※ 최종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 매칭
- ※ 부문별 선정 편수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각 부문에 적격 작품이 없거나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용도** :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가능 * 별첨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구분	사용 용도
인건비	•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작 인력의 직접 인건비
임차비	• 촬영장소 대관료(세트장, 외부 로케이션 등), 장비 및 소품 대여료 등
진행비	• 제작 및 완성 단계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회계수수료 등 제작 진행 경비

참고사항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인건비 집행 시 원천징수세 납부 및 2026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 2026년 10,3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집행 불가(법인사업자 대표 집행 가능) - 원천징수세액 및 4대 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집행 가능(단, 고용주 부담금 제외)
	식대	- 식대(부식비 포함)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기타	- 기자재(카메라, 조명 장비 등) 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등 운영 경비), 수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 운영절차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17.(화), 21일간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17.(화) 14:00까지, 9일간

※ 접수 마감일(3월 17일 화요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은 이메일은 접수되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lick0925@ofjeju.kr)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064-735-0622)

※ 제출서류(양식)는 진흥원 누리집(<https://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가능(진흥원 본원 2층 콘텐츠육성팀)

○ 제출서류

첨부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형식
1	지원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모든 제출서류는 PDF 변환 후 1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	
3	제작비 예산계획서	· 인건비, 임차비, 진행비 3개 항목 구분 작성 · 별첨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하여 작성	
4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또는 구성안	· 장·단편 극영화 :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제출 · 다큐멘터리 : 기획구성안 제출	
5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 필수 기재	압축파일명과 메일 제목은 '영화명_제주 다양성영화 장편/단편 제작지원'으로 제출
7	평가위원 추천표	· 무작위로 5개의 번호를 지정하여 체크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제작사 :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체크)	
9	국세 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0	지방세 완납증명서		
11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저작권 계약서, 투자계약서, 타 기관 협약서, 스태프·배우 계약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첨부	

- ※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직인 또는 서명 후 PDF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사)에 있음
-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담당자	메일주소	문의전화
콘텐츠육성팀 고경옥 주임연구원	click0925@ofjeju.kr	064-735-0622

4.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지원조건

- 가. 최종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
- 나.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 ※ 보증보험 수수료는 개인 부담이며,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취소
- 다. 협약기간(협약체결일 ~ 2026. 12. 10.)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 (2026. 12. 30.)까지 러프컷 완성본 제출

- ※ 완성본 제출기한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함(지원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 러프컷 완성본은 러닝타임 및 서사 구조가 확정된 편집본(구조 확정 편집본)을 제출하여야 함
- ※ 단, 당초 협약기간 내 본 촬영을 개시하지 않은 작품은 연장 불가

- 라. 총사업비 기준 항목 간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하되, 변경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에는 예산 변경이 제한됨
- 마. 완성본 제출 후 1년 이내에 국내외 개봉(방영), 영화제 출품 등 결과물 활용 내역 제출
- 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상영본(크레딧) 및 홍보물 등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p>소정 양식</p> <p>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p>	
---	--

- 사. 진흥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성과물 및 수행기업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참여제한**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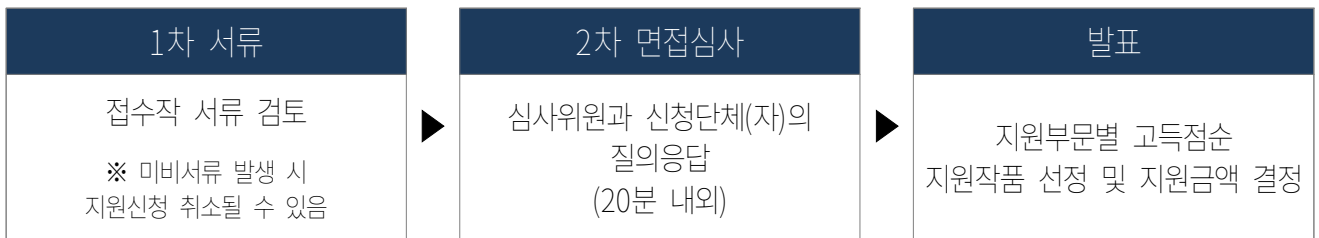
- 가. 극영화의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 촬영이 개시된 작품은 지원할 수 없으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 기관 포함)로부터 중복하여 제작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제작지원 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하나, 예산 중복 지출 및 증빙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진흥원 및 타 제작지원에도 통보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사)에게 있음

- 라. 신청일 기준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완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개인인 경우
- 마.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완료/미납 중이거나 진흥원 관련 규정 또는 협약 및 계약 등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개인인 경우
- 바.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 「영화인 신문고」 기준 스태프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혹은 소송 중에 있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아.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자.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5.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각 분야(연출/제작/투자배급/평론/기타 등)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심사일정** : 2026년 3~4월 중 (※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심사의 세부내용 조정 가능)



※ 1차 서류 통과 신청단체(자)는 개별 연락을 통한 면접일시 안내 예정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 점
작품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의 완성도 및 서사 구조의 탄탄함 • 작품의 창의성 및 참신성 • 기획의도 및 주제의식의 명확성 	40점
제작(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 인력 구성의 전문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 이해도 	30점
지역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소재의 서사적 구조적 반영 수준 • 도내 촬영 비중 및 지역 산업 연계성 • 제주도민 인력 참여의 질적 수준(주요 스태프 참여 여부 등) • 제작 과정 전반에서의 실질적 지역 파급효과 	20점
작품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급·유통 전략의 구체성 • 영화제 출품 및 상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마케팅 전략 및 향후 확장 가능성 	10점
합 계		100점
우대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 중심 3개 조건 충족 작품(3점) ※ 제주 소재·촬영 40% 이상·도민 20% 이상 3개 조건 모두 충족 작품 • 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입상 작품(3점) • 진흥원 내 입주기업(2점) • 제주도 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 주요 스태프로 참여한 경우(2점) ※ 주요 스태프: 연출, 촬영, 조명, 미술, 편집 등 핵심 창작 스태프 	최대 5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 예산 한도 내 지원금액 산정

※ 모든 우대가점 사항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

※ 선정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 승계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 집행 · 정산



○ 지원금 지급

가. 신청자(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해야 함

나.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제작 진행 단계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1차 :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등본), 통장사본 등

※ 2차 : 중간보고서,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등본), 통장사본 등

다. 신청자(사)는 지원금 지급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집행

- 가. 신청자(사)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를 관리하여야 하며,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 사업비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현금인출 집행 방식 금지)
- 나. 집행기간은 협약서상 수행기간(협약체결일 ~ 2026. 12. 10.)으로 하며 지출항목, 금액 등 당초 제시했던 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다. 진흥원은 신청자(사)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자(사)는 성실히 응해야 함
- 라. 순제작비(사전제작, 후반작업 비용 포함)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함
- 마. 중간보고 단계에서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증빙자료 사전 점검 실시
- 바. 중간보고 단계의 점검은 최종 정산 확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정산 시 부적정 집행은 환수될 수 있음
- 사. 총사업비 기준 항목 간 10%를 초과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아. 총사업비 기준 항목 간 10% 이내 예산 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하나 변경 발생 시 7일 이내 공문 통보 필수
- 자. 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예산 변경 제한

○ 지원금 정산

- 가. 신청자(사)는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정산범위 : 총사업비(지원금 + 자기부담금(지원금의 10% 이상))

※ 자부담 미이행 또는 축소 집행 시 지원금 감액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 : 공문 및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 통장 거래내역 사본, 집행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 지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사)는 결과보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

- 라.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신청자(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결과물 귀속

가.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감독에 귀속되나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

-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오프라인 무료사용
(단, 사용 전 상호 협의 후 진행)
- 진흥원 시설 운영(스튜디오, 영화관, 공연장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
-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신청자(사)가 제출한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보도자료 등)

○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신청자(사)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나.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비를 영화 순제작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신청자(사)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등 결과가 미흡할 경우
- 협약기간 내 제작을 중단·포기하거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결과 영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 내용과 시나리오 등이 사전 협의 없이 현격히 다르거나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사)의 사업수행 능력 상실 또는 지원작품(작가 포함)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작품에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외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신청자(사)가 해결한 후 작품에 사용해야 함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사)의 책임으로 봄
-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